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2020학년도 제 8차 이사회의록

- 회의 소집일 : 2020년 11월 25일
- 개최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6시
- 장 소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 개최예배 : 찬송-314장, 성경-예레미야 33:2-3
기도-김철승 이사

구 분	이사	감사	계
임원 정수	12	2	14
재적 임원	10	2	12
출석 임원	8	1	9
결석 임원	2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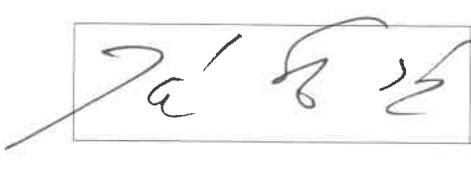
1. 출석현황 :

참석이사	김성길, 이철호, 김철승, 이숙재, 김금자, 조진웅, 이진일, 윤육희	8명
결석이사	정성후, 백수경	2명
참석감사	양병철	1명
결석감사	박진섭	1명
배석자	박용선 사무국장	1명

2. 안 건 :

제 1호 의안	이사 선임 취소 의결(안)
제 2호 의안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 선임(안)
제 3호 의안	정관 개정(안)
제 4호 의안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 5호 의안	교원 인사(안)
제 6호 의안	대학재정현황 보고 및 방안 연구
제 7호 의안	기타(안)
	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3.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이사장이 재적이사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김 금 자
---	---	-------

4. **전차회의록 접수** : 이사장이 전 회의록(2020.11.5)의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전원 동의하다.

5. **회의내용** :

제 1호 의안 : 이사 선임 취소 의결 안

- 이사장이 2020학년도 제6차 이사회(2020.10.15.)에서 연임 의결된 이형규 이사가 현재까지 이사 취임을 승낙하고 있지 않아 이사 선임 의결을 취소하기 위해 본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심의 후, 몇 차례 이메일과 연락 등을 통해 취임 승낙에 대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승낙 행위가 없는 것은 이사 취임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형규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을 취소하기로 하자는 김철승 이사의 동의와 이숙재 이사의 재청에 따라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형규 이사 선임 의결 사항은 취소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다.

제 2호 의안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 선임(안)

- 이사장이 정성후 이사(개방이사 겸 교육이사)가 이사 사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후임 선임을 위해 정관 제20조의5에 의거 대학평의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인 추천 위원 2명을 선임하기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하다.

- 논의 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으로 김철승 이사, 김금자 이사 이상 2명을 추천하자는 조진웅 이사의 동의와 이진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성후 이사 후임을 추천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으로 김철승 이사, 김금자 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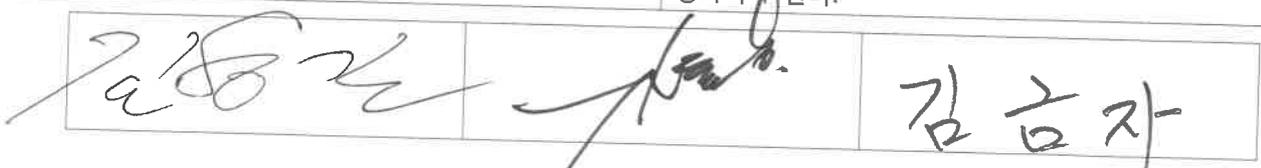
- 이사장이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과 정관의 일치를 위해 정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아 래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사회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①이사회는 재	제28조(이사회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①좌동

김철승		김금자
-----	---	-----

<p>적이사의 과반수로 개최한다.</p> <p>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신설”</p>	<p>②좌동</p> <p>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를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제29조의 2(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29조의 2(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⑥ <u>현행과 동일</u></p> <p>⑦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제41조(직위해제) ①~⑥ <u>현행과 동일</u></p> <p>⑦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하여야 한다.</p> <p>⑧ “삭제”</p>
<p>제66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 동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3명 2. 직원 2명 3. 학생 3명 4. 동문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6. “신설” <p>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6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 동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3명 2. 직원 2명 3. 학생 3명 4. 동문 2명 5. <u>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u> 6. <u>조교 1명</u> <p>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6조의 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66조의8(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66조의9 “신설”</p>	<p>제66조의9(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법인임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② 이 경우 학생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10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5/10 미만이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 “신설”	제66조의10(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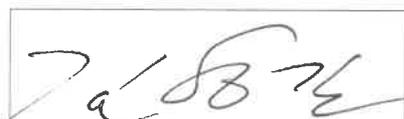
- 심의 후 원안대로 정관을 개정하자는 조진웅 이사의 동의와 김철승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관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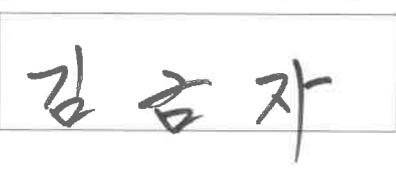
제 4호 의안 :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이사장이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초빙 공고를 공개적으로 하였으나 적절한 지원자가 없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총장 초빙에 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아 래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총장응모 자격) 총장 초빙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만 70세 미만인 자로 사립학교 교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개신교 정통 교단의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 ② 신설	제4조(총장응모 자격) ①총장 초빙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만 70세 미만인 자로 사립학교 교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개신교 정통 교단의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 ② <u>외부인사를 영입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전항의 1호 내지 2호의 기준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의 경우 총장의 지위에 맞는 경력과 덕목이 충족하는 조건(정부 고위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u>
제5조(총장 선임 원칙 및 예외) ①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에서 추천된 2배수 이상의 예비 후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총장의 공고는 대학홈페이지와 일간지(1개 이상)에 게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을 선출한다. 1. 보선으로 인한 총장 선임 시 그 잔여임기가 1/2	제5조(총장 선임 원칙 및 예외) ①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에서 추천된 2배수 이상의 예비 후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총장의 공고는 대학홈페이지와 일간지(1개 이상)에 게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을 선출한다. 1. 보선으로 인한 총장 선임 시 그 잔여임기가 1/2





<p>이하가 되지 못하는 경우</p> <p>2. 총장 임기 만료 전 연임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p> <p>3. 총장추천위원회로부터 기한 내 총장후보의 추천이 없을 경우</p> <p>④ “신설”</p> <p>⑤ “신설”</p>	<p>이하가 되지 못하는 경우</p> <p>2. 총장 임기 만료 전 연임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p> <p>3. 총장추천위원회로부터 기한 내 총장후보의 추천이 없을 경우</p> <p>④ 제1항에 의거 총장후보자를 공개초빙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추가 초빙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차 추가 초빙 절차는 본 위원회의 위원과 법인 임원이 직접 후보자를 물색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본 위원회 2인 이상의 공동 추천으로 후보 등록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 후보가 추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 제3호의 사유로 간주하여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p>
--	--

- 심의 후 원안대로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을 원안대로 개정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총장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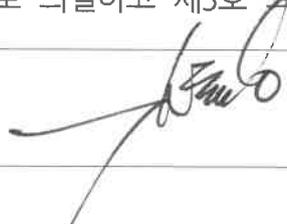
제 5호 의안 : 교원 인사(안)

- 이사장이 정관 제36조 제2항에 의거 예수대학교 총장으로부터 2021.3.1.일자 승진 요청된 아래 교원의 인사 제청건의 처리를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아 래 -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 임용일	임용기간	최 종 위 학 위	교원 인사 위원회 의 결 일	총장제청일
						2020.12.9	2020.12.10
						2020.12.9	2020.12.10

- 심의 후 대학 재정의 어려움 및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 현안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원 승진 등을 대학의 제청 요구대로 승인하는 것보다 대학이 향후 추진해야 할 대학구조조정 등의 방향 설정 이후로 그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철승 이사의 동의와 조진웅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제5호 의안의 의결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	---	---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다.

제 6호 의안 : 대학재정현황 보고 및 방안 연구

- 이사장이 박용선 사무국장에게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국장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결산 및 예산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대학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다.

- 논의 후, 금번 회의에서 대학재정개선 등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바, 대학 재정 현황 분석 및 향후 대학구조조정 방향 설정을 위해 "대학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위원으로 이진일 이사, 윤욱희 이사, 윤용순 이사 이상 3명을 선임하기로 하자는 이철호 이사의 동의와 김철승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대학 재정 현황 분석 및 향후 대학 구조조정 방향 설정을 위한 "대학재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7호 기타 안건

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정

-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제2항에 의거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자의 추천을 요청하니, 김성길 이사장, 김철승 이사, 김금자 이사 이상 3인으로 하자는 이숙재 이사의 동의와 이철호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6. 폐회 선언 :

- 이사장이 폐회 성안을 요청하니 조진웅 이사의 동의와 이진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9시 10분이었다.

		
---	---	---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이 사장 김성길



이 사 이 철 호



이 사 김 철 승



이 사 이 숙 재

이 숙 재

이 사 김 금 자

김 금 자

이 사 조 진



이 사 이 진 일

이 진 일

이 사 윤 육 희

윤 육 희

감 사 양 병 철

양 병 철

김성길		김금자
-----	---	-----